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Plus Chungnam Policy Forum

KAPA 한국행정학회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해결 제도화 주제」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충남발전연구원



EM015922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 · 해결 제도화 추진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 때 : 2010년 4월 16일(금), 14:00~18:00
- 곳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 주최 : 상생협력 ·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한국행정학회
- 주관 : 충남발전연구원
- 후원 : 충청남도

[전문가 워크숍 일정계획]

○ 진행 : 임명재 박사(충남포럼 사무차장)

시 간	내 용
14:00~1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회사 :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축 사 : 김태룡 한국행정학회장
〈사회 : 박우순 교수(동아대학교)〉	
14:10~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포럼 운영현황 소개(최병학 포럼 운영위원장)
14:20~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최병학 운영위원장/강준배 사무관) 및 전문가 토론
15:10~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식
15:20~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 · 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안설명 (은재호 박사) 및 전문가 토론
16:10~1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식
16:20~17: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관리 프로세스 제안설명(길병옥 교수), 사회통합 및 갈등 예방 · 해결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종합 토론
17:4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리 및 폐회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찬

[목 차]

I.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현황 보고	/ 1
II. 「충청남도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운영조례안」 및 제안설명	/ 19
III.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법률안」 및 제안설명	/ 33
VII. 부 록	/ 57
■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관리법안	/ 59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 71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 85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95
■ 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관련 조례	/ 103
■ 갈등관리 프로세스: 기본방향 및 절차	/ 125

I.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현황 보고

- 2006~2008년도 운영현황
- 2009년도 운영현황
- 2010년도 4월 현재 운영현황

2010. 4. 16.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 교육·학습, 조사연구, 현장지원 운영현황 -

최 병 학 박사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운영위원장)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설치·운영

■ 설치근거

- 포럼의 설치근거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정 2007. 2. 12, 대통령령 제19886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 2007. 5. 11, 총리령 제847호),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2005년 6월 국회상정 후 계류, 폐기) 등이며, 이미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상생협력·갈등 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주관기관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을 지정(2006. 7) 및 포럼정관 개정(2007. 5. 23)에 따라 전담 「사무국」 설치를 완료함

■ 추진경과

- 포럼의 추진경과는 2006년 3월에 공공갈등관리업무 추진계획 수립·시행, 지자체 별 공공갈등관리책임관 지정·운영, 시·군별 갈등관리책임관 지정(시·군 부단 체장 16명), 2006년 5월에 공공갈등관리책임관 지정·운영 등 네트워크 구축 강화, 「상생협력·갈등관리 정책포럼」 및 「학습동아리」 구성·운영 세부추진계획 시행 착수, 2006년 9월에 공공갈등관리 담당공무원 역량제고 워크숍 업무연찬 실시, 공공갈등관리 공무원 전문교육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충청남도는 2005년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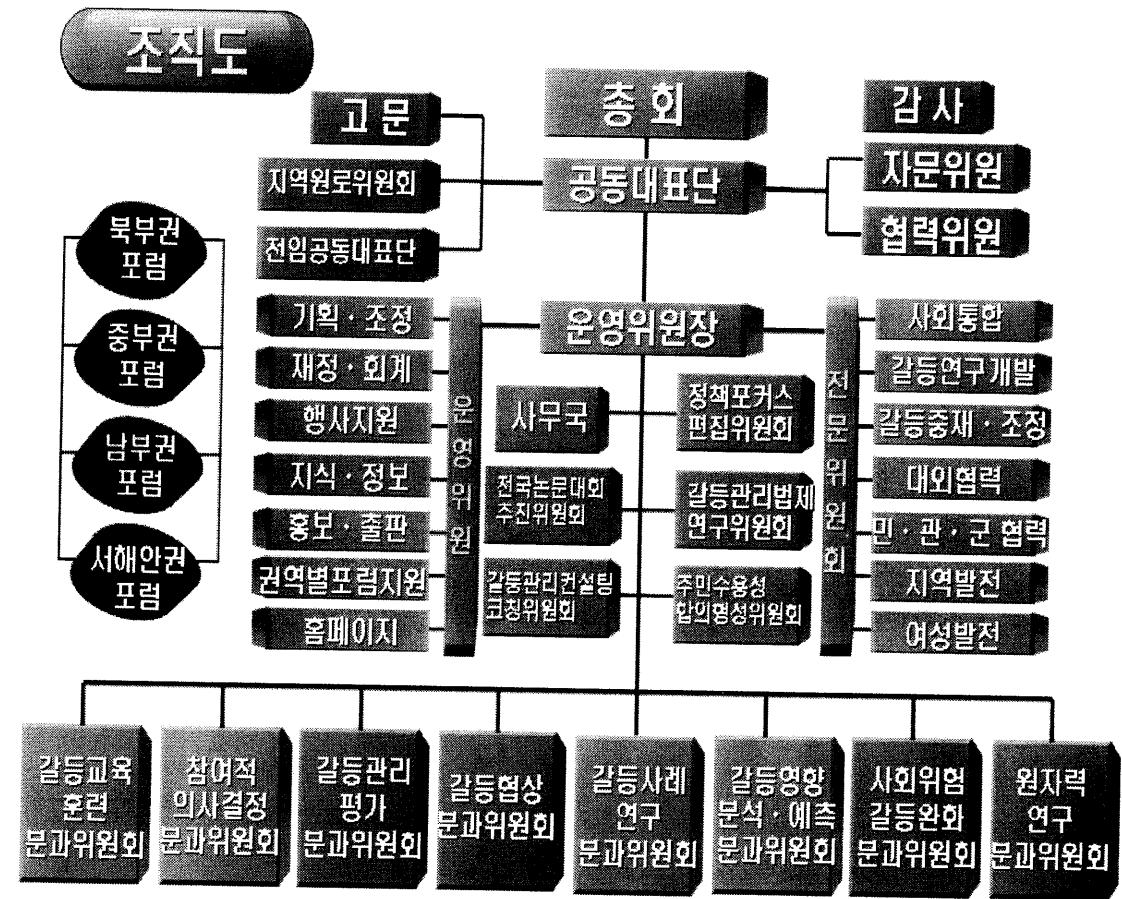
- 또한 2006년 9월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창립총회」 개최계획 수립을 토대로 10월에는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06년 10월 30일에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창립총회 개최와 함께 및 2006년도 1차 워크숍 개최와 함께 임원진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기반을 갖춤
- 이에 따라, 2007년 5월 23일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2007년도 제1차 정기총회 및 제1차 워크숍 개최되었으며, 7월 11일에는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2007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고, 8월 20일과 21월 2일에는 각각 제2차 워크숍 및 운영위원회, 제3차 워크숍 및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12월 13일에는 제4차 워크숍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함
-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07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관련 재정인센티브를 받음
- 이에 2008년도 상생포럼은 워크숍개최, 연구조사사업, 충남갈등맵 구축, 상생·갈등관련 대학(원)생 전국 우수논문발표대회,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대외 홍보사업, 교육연찬사업, 권역별 포럼 운영지원, 정책포커스 발간 등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음

■ 기능 및 역할

- 포럼의 기능 및 역할은 충청남도의 공공기관 및 각종 갈등유발 대상 및 주체들의 갈등을 보다 완화시키고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하며, 상생협력 및 갈등완화 관련 교육사업, 연구사업, 실천적 지원사업을 각계 각종의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전문가집단의 참여를 통해 추진하며, 특히 포럼의 정체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홈페이지 활용, 포럼 회원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경주하였음

■ 조직구성

- 충남포럼 조직구성(08. 8. 13, 임시총회 확정 및 08. 12. 18 정기총회 개정)



- 포럼의 조직은 총회를 중심으로 고문, 공동대표단, 전임공동대표단, 감사, 자문 위원, 협력위원, 운영위원, 전문위원회, 분과모임으로 구성되었음
-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운영위원회는 기획·조정, 재정·회계, 행사지원, 지식·정보, 홍보·출판, 권역별 포럼지원, 홈페이지구축 등 7개 분야로 나눴으며, 전문위원회의 경우 사회통합, 갈등연구개발, 갈등중재·조정, 대외 협력, 민·관·군 협력, 지역발전, 여성발전 등 7개 분야로 구성하여 포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
- 갈등교육훈련, 참여적 의사결정, 갈등관리평가, 갈등협상, 갈등사례연구, 갈등영향분석·예측, 사회위험갈등완화 등 7개의 분과모임은 수시로 모임을 갖고 상생협력·갈등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담론형성을 통해 갈등의 원활한 해결 노력을 경주함

□ 2009년도 운영계획

- ※ 포럼은 기본사업으로 갈등현장 중재·관리시스템 구축, 갈등관리 담당자 교육 연수 실시, 「정책포커스」지속 발간, 제2회 전국 대학(원)생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 정기적인 상생협력·갈등관리 세미나 개최, 홈페이지 실시간 지식·정보 전달 기능 활성화, 실천지향적 전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충남 4대 권역별 포럼과 연계협력·동반발전 모색, 연구조사 사업의 지속적·연속적 추진 등을 통하여 전국 제1의 갈등관리 道 구현을 위해 가일충 노력하였음
- ※ 특히 갈등현장 실천적 지원·중재 역할의 확대함으로서, 각 위원회별 현장기능을 확보 및 필요시 현장투입을 추진, 사전 현장관리 및 실무워크숍 개최,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갈등중재 및 협의조정기능에 대한 축적 관리를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합의형성·역할분담을 도모하였음

■ 2009년 추진목표

- 「다자간 소통」을 위한 교육·연수 강화
 - 정기 세미나 개최, 갈등업무 담당자 및 임원·회원 교육연수 실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현장 학습 등 지속적 추진을 통한 소통 구조의 확립으로 道, 시·군간 공공갈등 해소 및 협력체제 모색, 도민 의식교육 강화
- 「상생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연구·조사의 내실화
 - 갈등현장 중재·관리 시스템 구축, 기획연구과제 수행, 정책포커스 발간 등을 통한 상생협력·갈등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 실시간(real-time) 지식정보 제공, 상생협력·갈등관리 저변확산 추진
- 「실천적 포럼」을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 내실있는 사무국 운영, 운영위원회·실무협의회 개최,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실시로 충남포럼 운영기반 고도화 및 제도화로 갈등의 실천적 예방·지원·조정 기능 확립

<2009년도 포럼 운영방향>

- ※ 교육·연구개발 및 학습역량 확보
- ※ 갈등현장 예방관리 지원 활성화
- ※ 포럼운영 통합관리 성공모델 구축

■ 2009년 기본방향

○ 충남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거버넌스 구축

- 상생협력·갈등관리 전문역량 강화
 - 다자간 소통구조 및 사회적 합의형성 기회 확충
 - 4대 권역별 상생협력 파트너십·네트워킹 활성화
- ⇒ 포럼운영 활성화로 「실효성 있는 갈등예방의 제도적 장치」 정립

■ 2009년 추진계획

○ 갈등현장의 예방 역할의 확대

-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 관련 「갈등순회 매니저 제도」 도입, 「민·관협력 모니터링센터」 설치 운영 방안 모색 등 포럼 차원에서의 적극적 협력
- 각 위원회별 필요시 현장협력 활성화
- 사전 현장관리 및 실무워크숍 개최
-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간 소통 및 합의형성 촉진, 역할분담 도모
-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갈등 예방관리 활성화

○ 세미나 및 담당자 교육연수 개최

-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 갈등관리 담당자 교육연수 실시

○ 정기간행물 발간

- 정기간행물 「정책포커스 : 상생협력·갈등관리 - 동향과 대안」의 지속 발간

○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

- 2008년에 이어, 제2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

○ 기획연구과제 수행 및 갈등 상황 대응 매뉴얼 연구개발

- 충남도내 심각한 갈등사례에 관한 기획 연구과제 수행
- 상생협력·갈등관리 특정분야 갈등 대응 매뉴얼 작성 개발

○ 사이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2008년도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이어, 충남포럼~4대 권역별 포럼 간 실시간 지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갈등맵 제작, 특히 지역원로 DB구축 및 홈페이지 수요자 중심 서비스 품질 향상

○ 4대 권역별 포럼과의 연계협력·동반발전

- 북부권 : 천안시, 아산시, 예산시, 연기군
- 중부권 :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
- 남부권 :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서해안권 :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홍성군

○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사무국 운영 내실화

- 운영위원회 및 각종 실무협의회 개최
- 정책포커스 등 정기간행물 편집위원회 개최
- 지역원로위원회 출범 등 포럼역량 강화 및 내실화 추진

□ 2009년도 추진경과

■ 제1회 기획세미나 개최(2009. 4. 15)

- 충남포럼은 4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천안 나사렛대학교 제2창학관 7층 세미나실에서 「전환기 휴먼뉴딜 인재육성과 상생지향적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1회 기획세미나를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와 공동주최함
- 아주영 포럼상임공동대표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세미나는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인재교육연구본부장의 기조강연과 제1세션 「휴먼뉴딜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제2세션 「상생·협력을 향한 지역발전전략」으로 이루어짐

- 특히, 충남포럼이 주체적으로 진행할 제2세션은 최한규 단국대 교수의 「상생의 논리와 사회통합적 지역발전」, 권경주 건양대 교수의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비정부조직(NGO)의 역할과 과제」 등의 주제발표와 박연석 회장(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오은순 교수(공주대), 최정진 교수(한남대), 이준건 부소장(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의 지정토론으로 구성됨



-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장기화 되어가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휴먼뉴딜 기반 인재육성을 통한 상생협력적 지역발전 전략의 모색이 이루어짐

■ 「사회갈등포럼」과의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 (2009. 8. 20)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2007년 8월 20일 상호협력 MOU 협약을 맺은 사회갈등연구소(소장 박태순)의 “사회갈등포럼”과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음



- 지난 3월 27일 16시에 서울 사랑의 열매회관 지하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사회갈등포럼” 창립 발기인 대회에 본 포럼 운영위원장 최병학 박사는 창립 발기인 및 창립 실무위원으로 참석하여, 충남포럼의 운영사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 상생협력·갈등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음

- 또한 본 포럼에서는 이후 4월 24일과 5월 22일에 열린 사회갈등포럼의 실무회의 등에도 참석하여, 갈등관리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6월 5일 14시부터 사랑의 열매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사회갈등포럼” 창립 기념 토론회 및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으로 발생한 서귀포 강정마을 갈등 현황과 공동체 회복방안”에 대한 토론을 청취하였고, 다양한 갈등관련 자료를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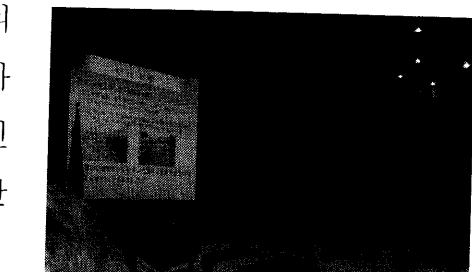
- 앞으로 충남포럼과 “사회갈등포럼”간의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상호간 협의를 공고히 하였음



■ 「금강살리기」 공동협력 포럼 참여(2009. 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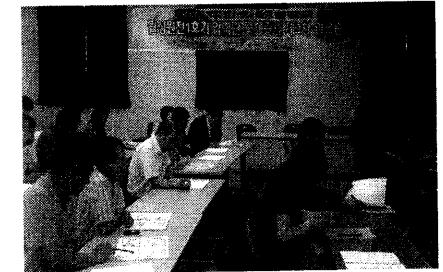
- 충남포럼의 최병학 운영위원장은 4월 10일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개최된 「금강 살리기 공동협력 포럼」에서 "성공적 「금강살리기」를 위한 시·군 공동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하였음
- 충청남도지사, 금강권역 7개 시장·군수(공주,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가 함께한 자리에서 최병학 운영위원장은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주민의 인기에 민감한 나머지 지역구 선심사업을 위해 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형태를 지칭하는 '포크 배럴(pork-barrel)'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함
- 이 같은 갈등 소지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접지역 간 상호보완적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사업 및 공동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하며, 또 자치단체 간 소통구조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고 여론을 수렴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군 협의회'를 시급히 운영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4대강(금강)살리기(안) 지역설명회(충남)」 참석(2009. 5. 11)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사무국에서는 5월 11일 15시부터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4대강(금강)살리기(안) 지역설명회(충남)」에 참석하여,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의 홍보동영상 시청, 마스터플랜(안), 패널토론,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였음
- 이번 지역설명회를 통해 충남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보상대책을 요구하는 부여 주민들의 단상점거로 설명회가 30여분간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이 행사에서 나온 주요 의견은 '하천부지의 지속 영농 가능한 사업추진 방안 마련 필요', '금강은 백제길 복원에 중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이 필요', '지역설명회를 통해 지역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원칙만 제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 '금강살리기 사업에 연기군 소외, 지천살리기 사업 적극 포함 요구', '하천 경작농민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탄력성 요구', '보 설치 보다는 댐의 설치 등 항구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 '금강뱃길사업에 왕진나루 포함 촉구', '진정한 금강살리기를 위해서는 지천살리기가 우선되어야 함', '철새도래지 사업에 중앙정부의 지원필요'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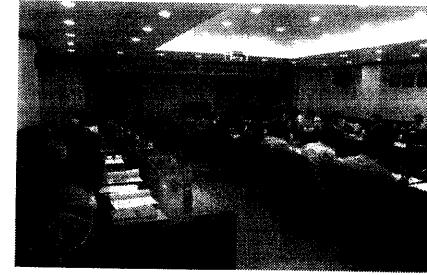
■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주최 워크숍 참여 및 공식방문(2009. 7. 10)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의 최병학 운영위원장과 이준건 갈등중재·조정위원장은 7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경주시월성원전민간감시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환경감시기구 워크숍」에 참석, 각각 주제강연 및 토론에 참여함
- 이 자리에서 최병학 박사는 "지역의 갈등사례와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주제로 그동안 충남에서 발생한 갈등과 해결사례, 충남포럼의 운영사례, 경주 방폐장 유치사례등의 검토를 통하여 지역갈등의 예방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음
- 「(원전시설) 압력관 교체에 대한 이해와 발전적 접근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주시의 주요산업인 원자력의 현안을 공유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지역의 주인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충남포럼과 경주시민간환경감시센터간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재다짐하는 기회가 되었음

■ 2009년도 하반기 운영계획 및 「갈등예방시스템 구축」 실무회의 개최(2009. 7. 21)

- 충남포럼은 7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갈등관리 및 금강살리기 관계관, 사회갈등연구소 전문가 및 충남포럼, 4대 권역별 포럼 임원 및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하반기 운영계획 및 「갈등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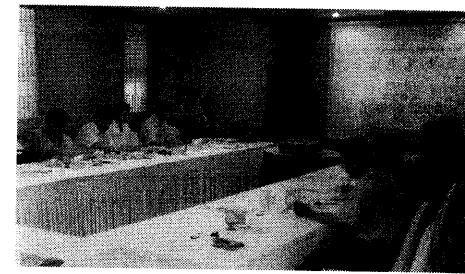
- 이 자리에서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의 예방·중재·조정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으며, 道 차원에서의 갈등관리 예산확보의 강력한 의지 표명 및 협조 당부, 道, 시·군 갈등관리 담당자의 포럼의 중요성 인식 및 협조 요청,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포럼의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 당부 등이 이루어졌음



- 또한 포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 HuCARE 2009 Organizer 협력네트워크 구축
(2009. 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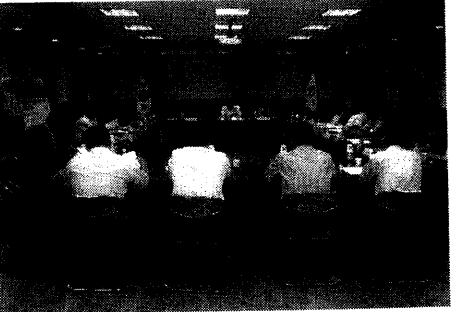
- 충남포럼에서는 HuCARE Organizer(대표 한밭대학교 김동화 교수) 조찬모임에 최병학 운영위원장, 조성남 공동대표, 이준건 갈등 중재전문위원장, 이경용 운영간사 등이 참석하여 지역의 갈등관리 및 상생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고, 지역의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다짐하였음. 이 자리에서 최병학 운영위원장은 상생협력·갈등 관리 충남포럼의 운영현황 및 실적과 관련한 기조발표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익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음



**■ 「충남 예산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관련 제1차 좌담회 개최
(2009. 8. 25)**

- 충남포럼은 8월 25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암면사무소에서 충남포럼 임원 및 회원 등 전문가, 道 관계관, 아산시 관계관, 예산군 관계관, 사업자 대표 및 관계자, 시공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갈등문제와 관련한 제1차 좌담회를 개최함

- 현재 아산시와 예산군 간 잠복된 갈등문제를 본 포럼 주최의 좌담회 개최를 통하여 대화의 물꼬를 트고, 소통기회를 마련함에 따라 갈등완화의 길을 모색하고, 특히 아산시와 예산군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장을 마련하였음



- 이번 좌담회를 통하여 충남포럼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시·군간 갈등관련 현장갈등예방사업으로서 포럼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현장의 특성과 제약조건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각 시·군의 주민대표 및 의회의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할 때, 아산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 전망되었음

- 향후 충남포럼에서는 현장지향적 갈등예방관리 역량강화 및 관련분야 전문가 확보에도加일층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음

**■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 및 갈등조정시제도 도입」 관련 자문회의 개최
(2009. 9. 4)**

- 충남포럼은 9월 4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충청남도의 갈등관리 조례제정 및 갈등조정시제도 도입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함
- 이 자문회의에는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충청남도 갈등관리 관계관, 한국행정학회 위기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사회갈등연구소 전문가, 충남포럼 임원 등이 참석하였음
- 이 자리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 관리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면밀한 분석과 법령제정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연계된 충청남도의 조례제정 방향 및 갈등조정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음

-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을 통해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의 운영지원 활성화 및 권역별 포럼 및 시·군 단위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갈등관리 및 조정의 전문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전문자격 도입은 향후 전문화, 체계화된 갈등관리 및 조정영역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세미나 개최 (2009. 1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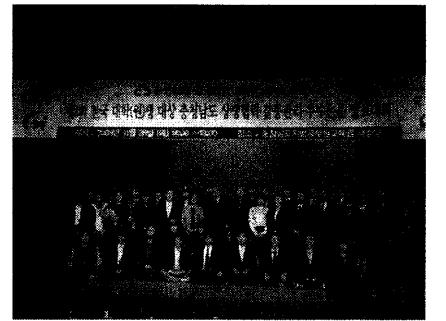
- 충남포럼은 10월 14일(수), 14시부터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남부권역 정책포럼,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세미나를 개최함
- 주제발표에 나선 최병학 충남포럼 운영위원장(충발연 연구위원)은 “현재 금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금강권역 7개 시·군간 중복 및 과다 사업, 편입농지 보상, 환경파괴 등 다양한 갈등상황이 예견되거나 이미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7월 금강권역 7개 시·군민 750명을 대상으로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5.9%인 241명은 금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답했고 금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예상되는 갈등의 범위는 지역간 갈등이 가장 크다”며 총 43.6%인 300명이 응답했다고 밝혔음
- 또 갈등해결 주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 217명인 31.3%가 ‘중앙정부’라고, 갈등중재 및 조정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9.1%인 338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음
- 아울러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단계적, 실현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갈등영향분석의 정례화를 통해 갈등에 대한 사후 조정보다는 사전



예방과 합의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갈등순회 매니저제도 등 민-관-산-학-연-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되 현장 위주의 자문과 아이디어 제공 등 보다 실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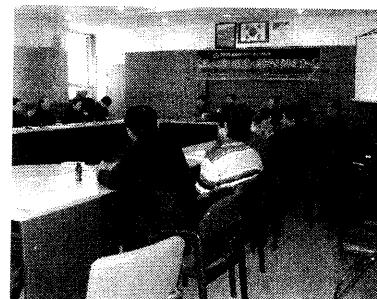
■ 제2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2009. 11. 26)

- 충남포럼에서는 지난 11월 26일(목), 오후 2시부터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논문발표자, 지도교수 및 학부모, 각 학교 응원단, 포럼 관계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논문대회는 11월 9일(월)~19일(목)까지 총 13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11월 23일(월) 1차심사를 거쳐 대학원생 부문 4편, 대학생 부문 4편 등 총 8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2차 심사를 거쳐 시상식이 거행되었음
- 대학원생 부문에서는 “세종시 건설의 정책비밀관성과 딜레마”에 대한 연구를 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정경태 군이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학생 부문에서는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갈등에 관한 연구: 공주시·부여군 중심으로”의 연구를 공동수행한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강서영, 이동현, 이슬기, 이용일, 임현수 팀이 최우수상이 차지했음
- 대학원생 부문과 대학생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최우수상 1팀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 1팀에게는 충남발전연구원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상 2팀에게는 충남포럼상임공동대표상과 상금 30만원 등 총 420만원의 상금이 전달되었음



- 충남포럼이 주최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였으며,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충청남도가 후원한 이번 논문대회는 논문의 완성도, 내용전달의 명확성 등을 평가하였으며, 충청남도의 갈등현안에 대한 대학(원)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날 제안된 연구결과는 충남도정의 주요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될 예정임

■ 2009년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 충남 정책포럼 임원 및 담당공무원 정기 교육 및 연수(2009. 12. 23)

- 충남포럼은 지난해에 올해 충남도포럼 임원 및 권역별포럼임원, 충청남도 및 16개 시군 담당공무원 등 45명이 참석하는 정기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였음
- 이번 연수 교육은 충남 서천군 지역의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먼저 장항읍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푸른서천21 김억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장·군 국가 산업단지 추진과정 및 갈등을 겪고 갯벌을 보존하는 환경사업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1시30분 동안 교육 및 토론을 벌였으며 이어 금강하구둑 수문 개폐를 두고 전북 군산시와 서천군과의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서천군 이선구 기획계장으로부터 현황 및 설명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음
- 특히 11월 착공한 국립 생태원을 건립 부지를 둘러보고 해양산업단지 성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보는 한편, 12월 11일 개관한 금강하구둑에 위치한 철새탐조대를 방문, 금강하구언의 생태환경 및 수자원의 오염실태와 심각성, 그리고 앞으로 예견되는 전북 군산시와 갈등을 풀어나가야 방향을 공동학습방식으로 연구하였음

□ 2010년도 추진경과

■ 2010년도 실효성 있는 금강 살리기 갈등예방 및 관리방향과 추진과제 세미나 개최(2010. 2. 2)

- 충남포럼은 2월 2일 화요일 충남 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를 실효성 있는 금강 살리기 갈등예방 및 관리방향과 추진과제 관련 세미나 개최함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한강 살리기 사업 및 안양천 살리기 사업의 추진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금강살리기 추진방안의 시사점을 발견, 탐색해 보고 학계, 전문가 및 공무원,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참복되거나 또는 현재화된 갈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 등을 찾아보기 위하여 개최함
-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금강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관간, 시군간, 주민간 갈등해결을 통한 협력방안, 「금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지역의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접근으로 문제제기와 함께 적합한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예상되는 갈등소지와 관련한 공론화된 논의과정을 통해 「금강살리기」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함
-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본방향이 명확해야 하며, 갈등해소를 위한 고려요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갈등유형별 갈등해소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갈등해소 및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제3차 간담회 개최(2010. 3. 3)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 「금강살리기 범도민 협의회」를 개회하고 4대강사업 홍보물 방영, 「금강살리기 사업」의 진행상황 보고, 토론회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금강살리기 사업」의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와 「미래를 연계, 구체화하고 범도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의견수렴, 합의형성 및 자문활동의 활성화하여 충남포럼을 통해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예방관리 및 현장지원체제 강화 필요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금강 살리기 사업」이 가장 모범적이며 협력적으로 추진할 것을 재차 다짐하였음



II. 「충청남도 사회통합 및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운영조례안」 및 제안설명

【초안 작성】

최병학 박사(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운영위원장)

【실무 검토】

강준배(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충남포럼 담당 사무관)

양승록(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충남포럼 담당 주무관)

2010. 4. 16

「충청남도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운영조례안」 및 제안설명

< 목적 >

- 충청남도의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
- 충청남도의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
- 충청남도 갈등관리 연구기관의 지정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갈등관리역량을 향상
- 충청남도와 주민 상호간에 상호간 신뢰구축 및 사회통합을 이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

- 조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돋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갈등에 대한 정의와 함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주요활동인 갈등예방과 갈등조정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기 위해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 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예방”이라 함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조정”이라 함은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의 지속가능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참여적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도지사의 책무>

- 충청남도지사는 갈등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 충청남도지사는 도의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참여를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함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및 공유>

- 충청남도지사는 갈등관리에 있어서 자율적 해결과 관련 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충청남도지사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및 당사자의 충분한 이해를 돋기 위해 노력해야 함

제4조(정보공개 및 공유) 도지사는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정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의 원칙>

- 당사자는 갈등관리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추진하도록 원칙을 세움
- 도지사는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신뢰확보와 이익 간의 비교형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제5조(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의 원칙)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갈등영향분석>

- 공공기관이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정책을 결정·추진함으로써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있는 바, 정책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갈등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기 위하여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함
- 주요시책 및 사업 등이 주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청남도지사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단계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통해 관련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제고와 함께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원만한 추진될 수 있음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 시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주민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책의 추진배경
 2. 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3.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5.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도지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 갈등영향분석서를 심의하고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필요함
-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갈등예방·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갈등구조를 파악, 해법을 모색하는데 유용할 것이 기대됨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3.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조정 및 해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 대상자를 지정함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임기를 정함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지방의회의원
2.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언론인
4. 시민단체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회의>

- 행정기관의 갈등의 예방·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갈등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개최요구를 명시하고, 위원회의 위원수가 과반수 이상이 개의하고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의결조건을 명시함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갈등 이해당사자들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 및 서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간사와 서기를 두고 이에 대한 업무와 직급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함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갈등조정전문위원회>

- 공공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립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는 갈등조정전문회의의 설치가 필요함
- 공공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전문적 검토 및 사회적 합의 촉진을 위한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통하여 갈등해결의 가능성과 이해관계인 형성의 신뢰회복 및 갈등해소 등의 실효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11조(갈등조정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갈등사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갈등조정전문위원회는 갈등조정시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갈등조정전문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당해 조정안건의 해결시까지로 한다.

<관계기관 등의 협조>

- 위원회는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립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하는데 요구되는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함
-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나 자료제공 등 협조를 하게 함.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수당 등 지급>

-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수당지급의 근거를 명시함

제13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운영세칙>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에게 재량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함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심의결과의 반영>

- 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한 내용을 수렴하여 충청남도 주요시책의 수립, 추진과정에 반영하여 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함

제15조(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주요 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 청문회, 공청회, 공람 등 기준의 참여제도로는 해결이 어려운 갈등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범위를 넘어서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공공정책 결정과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를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 관련 이해관계인들과 주민들의 참여와 대화가 보장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과 정책집행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제1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주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 충청남도 주요시책의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부서에 배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 소관부서 업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갈등에 대한 의견과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갈등관리 매뉴얼에 추가·보완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갈등관리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함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실·국장, 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② 소관부서의 장은 주요 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 충청남도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해 충청남도지사에게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도록 함
- 충청남도지사가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는 과정에서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한 경우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① 도지사는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관련 전문가포럼의 육성·운영 지원>

- 충청남도의 공공기관 및 각종 갈등유발 대상 및 주체들의 갈등을 보다 완화시키고 대화와 타협의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를 협력·지원하기 위해 포럼을 육성·지원하도록 함
- 상생협력 및 갈등완화 관련 포럼조성사업, 교육사업, 연구조사사업, 실천적 현장지원사업 등을 각계각층의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전문가집단의 참여를 통해 추진하도록 함

제19조(관련 전문가포럼의 육성·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 및 당사자간 합의형성의 촉진을 위한 민간주도의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 포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장 1인 외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포럼의 사무국은 지역 내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설치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지정후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포럼의 사무국장은 포럼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포럼의 활동은 갈등관리, 상생협력,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활동 및 갈등예방관리 세미나, 현장 간담회,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등의 개최, 정기간행물 발간·배포, 권역별 포럼 운영지원, 홈페이지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충청남도지사는 갈등전문가로 하여금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특수한 임무의 성격상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전문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을 통하여 갈등전문가를 양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 합리적인 갈등예방관리를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여 현장을 순회하는 갈등매니저제도 및 갈등현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민·관협력 갈등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등)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갈등관리조정사제도,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 추진할 수 있으며, 갈등예방관리를 위해 갈등매니저제도 및 민·관협력 갈등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 시행할 수 있다.

<재정지원>

- 충청남도 내에서 발생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각종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활동을 비롯하여 갈등의 조기해결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함
- 충청남도 내에 갈등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포럼운영 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연구조사사업, 정책개발, 교육훈련 및 각종 학술지원, 홍보활동, 갈등예방 및 갈등발생 현장지원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함

제21조(재정지원) 도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 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이나 대학 및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비밀유지>

- 위원회 활동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관계자의 비밀유지가 필요함
- 제22조(비밀유지)**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 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II.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법률안」 및 제안설명

[목 차]

- 제1장 총 칙
- 제2장 공공갈등관리의 기본원칙
- 제3장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
- 제4장 공공갈등관리계획
- 제5장 공공갈등관리의 연구 및 전문인력의 양성
- 제6장 보 칙

김태룡 교수(상지대학교, 한국행정학회장)

강영진 교수(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길병옥 교수(충남대학교)
· 김학린 교수(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은재호 박사(한국행정연구원) · 최병학 박사(충남발전연구원)

(가다다 순)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법률안」 및 제안설명

제1장 총 칙

<목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행정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정책갈등관리 연구기관의 지정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정책갈등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국민 상호간에 원만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역할·책무 및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 공공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 및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국민 상호간에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회복을 통한 합의의 틀을 구축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해결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이념, 역할과 책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하고자 함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공공기관과 국민 상호간에 대화와 협력 그리고 신뢰회복을 통한 합의의 틀을 구축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해결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법 규범임을 전제하면서, 이와 관련한 각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광의적 개념인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다른 용어와의 충돌을 피해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 이란 공공기관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법령 등을 집행하는 과정 또는 정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공기관” 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공공정책” 이란 공공기관의 장 및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행하는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 및 정책·사업계획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 이란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공공정책 등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기관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책무>

- 공공기관이 사회 전반의 종합적인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갈등의 예방·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 공공기관은 사회 전반의 종합적인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다양하고도 효과적인 갈등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① 공공기관은 사회 전반의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 등을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효과적인 갈등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능력을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반영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피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함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갈등관리의 기본원칙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서로 노력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함
- 공공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행정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제6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기관의 장과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으로 공공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여와 절차적 정의>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갈등관리에 있어서 자율적 해결과 관련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절차적 정의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제7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익의 비교형량>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갈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의 공익(公益) 또는 사익(私益) 간의 이익형량을 비교하여 충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제8조(이익의 비교형량)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및 공유>

- 공공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관련 공공정책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당사자의 충분한 이해를 돋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제9조(정보공개 및 공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 가치의 고려>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이 미래세대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고 당사자와의 가치의 충돌을 예방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10조(사회적 가치의 고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비용·편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

<갈등의 정책·영향 평가>

- 국가는 갈등의 예방 및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갈등에 대한 경제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여 갈등유발 위험이 큰 사안과 정책을 평가하여 갈등을 예방 및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는 이미 발생한 개별 사회갈등과 관련하여 원인을 진단, 분석하고 그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국가는 갈등에 따른 부처간 정책조정 및 구제절차 등에 대한 행정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회갈등 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회통합과 합의형성을 위한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신뢰와 합의 구축, 참여적 의사결정, 사전예방관리 방식 등의 대안적 분쟁갈등해결(ADR) 시스템이 요구됨

제11조(갈등의 정책·영향 평가) ① 국가는 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하여 사회통합의 상태나 수준을 조사·분석하여 갈등유발 위험이 큰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이미 발생한 사회갈등과 관련하여 원인을 진단·분석 및 경제사회적 성향을 평가하고 갈등의 해결을 위한 효율적, 합리적인 정책관리체계 구축을 권고한다.

③ 국가는 갈등에 따른 부처간 정책조정 및 구제절차 등에 대한 행정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 또는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사회갈등 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보다 효율적인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책집행의 제단계에서 갈등 관계분석, 협의강화 및 참여적 의사결정, 이해관계인간 합의형성 등 대안적 분쟁갈등해결(ADR)에 입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통합 및 갈등관리 모니터링센터>

- 국가는 전국적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회갈등을 파악하고 갈등이 경제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책평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책갈등에 따른 갈등예방·조정·전파하기 위한 사회통합 모니터링 제도의 설치·운영이 요구됨
- 효율적, 합리적인 갈등예방관리 및 해결을 위해 갈등현황을 실시간 관리하기 위한 사회통합적 갈등관리 모니터링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사회통합 및 갈등관리 모니터링) ① 국가는 전국적으로 정책추진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공공갈등을 체계적이고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공공갈등관리에 따른 갈등의 예방·조정·해결·전파를 위한 사회통합 및 갈등관리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갈등영향분석>

- 공공기관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정책을 결정·추진함으로써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있는 바, 정책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갈등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실현가능한 갈등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기 위하여 갈등 영향분석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상충에 따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입안단계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제고와 함께 실효성이 있는 갈등해결방안을 마련, 적용함으로써 원만한 정책추진이 기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13조(갈등영향분석)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상충에 따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3조에 따른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의 규정에 의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동사업을 소관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절차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그 밖에 갈등영향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과의 협의>

- 공공기관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영향분석에 관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문을 받아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예방·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14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과의 협의) 공공기관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영향분석에 관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이에 대하여 필요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갈등영향분석서를 심의하고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필요함
- 공공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갈등의 예방·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공공정책의 갈등구조를 파악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구성하고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의 구성을 과반수 이상 이 되도록 함

제15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은 소관 사무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과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

- 공공기관은 소관 사무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정함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세부적인 기능은 시책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갈등해결수단 발굴·활용 사항, 갈등관리 전문인력의 능력향상 사항,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등으로 정하도록 함

제16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 제2항에 따른 법령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제4조 제3항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제4조 제4항 및 제22조에 따른 공공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과 제23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공갈등관리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결과의 반영>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수렴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 할 때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해결하도록 심의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함

제17조(심의결과의 반영)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결정과정 또는 사업시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기준의 참여제도로는 해결이 어려운 갈등사례가 발생하고 있을 때 이러한 제도의 범위를 넘어서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을 공공정책 결정과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공공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참여와 대화가 보장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과 정책집행과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제18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제14조 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관 행정기관의 협조요청>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갈등으로 인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나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19조(소관 행정기관의 협조요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가기관등의 장과 민간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자체적으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자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 공공정책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가 필요함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공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형 촉진을 위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하여 갈등해결의 가능성과 이해관계인과의 신뢰회복 및 갈등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20조(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요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촉진을 위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갈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이 미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의회의 구성>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갈등의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대상자를 지정함
-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은 공정성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로 하고 협의회 의장에게 필요에 따른 회원의 선정에 재량을 부여하도록 함

제2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전문가 등 9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회원들의 협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② 회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이해관계인·일반 시민 또는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협의결과의 효력 및 이행>

-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협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전원 서명이 되도록 하여야 함
-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협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행하여야 함

제22조(협의결과의 효력 및 이행) ① 협의회의 협의결과는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회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갈등관리계획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국무총리는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의 지침을 부처별로 중점적인 추진사항과 국가공공갈등관리의 기본방향이 수립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공기관 갈등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함

제23조(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공공갈등 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공갈등 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공기관갈등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행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달 받은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여 국가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의 집행에 노력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 공공정책의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 및 해결에 노력해야 함

제24조(집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 받은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공공갈등계획의 수립>

-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공공갈등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갈등관리업무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공공갈등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제25조(지방자치단체공공갈등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공갈등관리기본계획과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갈등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지방자치단체공공갈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공갈등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공갈등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갈등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5장 공공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및 전문인력의 양성

<공공갈등관리 연구기관의 지정 등>

- 국무총리는 공공갈등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갈등관리 연구기관의 업무를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법령·정책 등의 연구, 관련 지침 작성 및 보급,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갈등영향분석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제26조(공공갈등관리 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국무총리는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갈등관리 연구 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법령·정책·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공공갈등의 예방·해결과정과 관련된 지침의 작성·보급
 3.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공공갈등관리지침의 작성 및 활용>

-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공공갈등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부처에 배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부서의 업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관리 매뉴얼에 추가·보완하여 이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함

제27조(공공갈등관리지침의 작성 및 활용) ① 국무총리는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갈등관리지침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갈등관리지침에 따라 공공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관리지침에 해당 공공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공공갈등관리 전문가 포럼의 육성·운영>

-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효율적으로 완화시키고 대화와 타협의 장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가 포럼을 설치하여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연구 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 사회통합 및 갈등완화 관련 기반구축사업, 조성사업, 교육사업, 연구 사업, 실천적 지원사업을 각계각층의 갈등관리 전문가집단의 참여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며, 특히 포럼의 정체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제28조(공공갈등관리 전문가 포럼 육성·운영) ① 국무총리는 필요에 따라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 및 당사자간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 포럼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무국을 설치하고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지정을 받은 공공갈등관리 전문가 포럼에서는 사회통합, 갈등 관리, 상생협력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활동, 갈등예방관리 세미나, 갈등현장 간담회, 정기간행물 발간, 홍보활동 등 필요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공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제도 도입 등>

- 그동안 사회문제 해결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어온 정부 조차 빈번히 갈등의 당사자가 됨에 따라 전문적인 조정·중재·협상능력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는 제3자로 하여금 갈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훈련을 통해 갈등조정사 전문자격의 제도 도입이 요구됨

제29조(공공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제도 도입 등) 국무총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및 갈등조정사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공갈등관리 갈등조정사 양성 및 활용>

-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의 갈등이 존재하나 현 시점에서 갈등관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갈등관리 전문가로서 갈등조정사 도입은 매우 필요함
-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조정·중재·협상능력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윤리의식을 갖춘 전문가로서의 갈등조정사의 양성이 필수적임
- 공공부문의 지속적이고 특화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전문적인 갈등관리의 대한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대학 및 전문가 집단 간의 협의를 통한 갈등조정사 자격제도 도입의 추진이 긴요함
- 국무총리는 갈등조정사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특수한 임무의 성격상 어느 한편으로 치우칠 수 없도록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을 통하여 순수한 갈등조정사를 양성·훈련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이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제30조(공공갈등관리의 갈등조정사 양성 및 활용) ① 국무총리는 공공갈등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사 자격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공공갈등관리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통하여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정의 교육 및 평가를 통해 갈등조정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③ 국무총리는 갈등조정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교육과정·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을 갈등조정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전문적인 조정·중재·협상능력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는 갈등조정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갈등조정사를 채용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갈등조정사 양성프로그램 운영 및 갈등조정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⑥ 갈등조정사 자격 제도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등의 공공갈등관리 교육훈련>

○ 국무총리는 소관부서의 업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해결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과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제31조(공무원 등의 공공갈등관리 교육훈련) 국무총리는 공무원의 공공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 교육훈련기관과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과 유형별 교재 개발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공공갈등관리 실태의 점검·보고 등>

-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해 공공갈등관리의 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함
- 국무총리는 공공갈등관리의 실태를 점검·평가를 위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자료 요구에 응하여야 함
- 국무총리는 점검·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협의를 위해 공공갈등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제32조(공공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①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결과를 국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국무총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공공기관의 협의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한 공공기관으로 구성되는 공공갈등관리협의회를 둔다.
- ⑥ 제1항에 따른 점검과 제5항에 따른 공공갈등관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시스템의 구축>

-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계기관이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해결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시행하여야 함

제33조(정보시스템의 구축) 국무총리는 공공갈등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갈등사례, 공공갈등관리 분야의 전문가, 국내외 자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재정지원>

- 공공기관의 공공정책에 대해 발생하는 각종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 활동을 비롯하여 갈등을 원만하게 조기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해결의 갈등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정책개발, 교육훈련 및 각종 학술지원, 홍보, 갈등발생 현장에 대한 조정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제34조(재정지원) 공공기관은 공공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정보 시스템의 구축, 교육훈련과 공공갈등관리 전문가 포럼 육성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공공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비밀엄수>

- 공공기관의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관계자의 비밀유지가 필요함

제35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 회원,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공공기관갈등관리자문단의 구성 · 운영>

-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공공기관갈등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공공갈등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36조 (공공기관갈등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기관갈등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갈등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벌 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갈등관리를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 및 직무상 목적 이외에 사용한 자에게는 벌칙이 요구됨

제37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또는 직무상 목적외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VI. 부 록

- 【현행 갈등관리 법안】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관리법안
- 【기존 갈등관리 법률안】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 【현행 갈등관리 관련 대통령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현행 갈등관리 관련 총리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현행 갈등관리 관련 조례】 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관련 조례
- 【갈등관리 제도화 모델 구상】 갈등관리 프로세스 : 기본방향 및 절차

2010. 4. 16

【현행 갈등관리법안】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관리법안

- * 이는 2009년 6월 18일 임두성 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것임(의안번호 : 5178)[발의자: 임두성·김무성·한선교·윤 영·정해걸·손숙미·김소남·오제세·김옥아·윤석용 의원 등 10명]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관리법안

□ 제안이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통하여 수행하는 국가기능은 민간부분의 영역과 정책적으로 상호 조율되면서 대부분의 경우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으나, 영역별로는 갈등이 증폭되어 정책위기상황이 초래되어 온 바 있음.

이러한 공공정책을 둘러싼 정책갈등의 원인을 사회의 민주화·다원화·정보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가행정의 보수성, 정책결정에 대한 민간참여제도의 미비 등에서 찾을 수 있음.

따라서 공공정책의 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갈등의 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국가기관의 정책갈등관리 연구기관의 지정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정책갈등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기관과 국민 상호간에 원만한 사회통합을 이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책갈등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책갈등관리에 있어서 자율적 해결과 관련 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공정책 결정 전에 정책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정책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0조).
- 라. 국가기관등에 소관 사무의 정책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정책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 마.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책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을 사회적 협의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당사자의 요청 등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사안별로 정책갈등관리조정협의회를 설치하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갈등의 경우 사전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사. 국무총리는 정책갈등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정책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법안내용

법률 제 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관리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정책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정책갈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 “공공정책”이란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가 하는 법령 등의 제정·개정 및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말한다.

- “정책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정책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정책갈등관리”란 국가기관등이 정책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전반의 정책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 등을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정책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책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책갈등관리의 기본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대화와 타협으로 정책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公益) 또는 사익(私益)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및 공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적 가치의 고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미래

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비용·편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정책갈등의 예방 및 조정

제10조(정책갈등영향분석)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에는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에 따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정책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갈등영향분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2조에 따른 정책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정책갈등영향분석서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정책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정책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정책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6. 그 밖에 정책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정책결정영향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과의 협의) 국가기관등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갈등영향분석에 관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이에 대하여 필요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정책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기관등은 소관 사무의 정책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등에 정책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속 직원과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정책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정책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과 제23조에 따른 공무원의 정책갈등관리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3. 정책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결정과정 또는 사업시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의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책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정책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관 행정기관의 협조요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가기관등의 장과 민간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자체적으로 정책갈등의 예방과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갈등해결을 위한 자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정책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책갈등을 원만하

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요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촉진을 위한 정책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갈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미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전문가 등 9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회원들의 협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② 회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제19조(협의결과의 효력 및 이행) ① 협의회의 협의결과는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회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정책갈등관리 연구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

제20조(정책갈등관리 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국무총리는 정책갈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갈등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정책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정책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법령·정책·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정책갈등의 예방·해결과정과 관련된 지침의 작성·보급
3. 정책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정책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정책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정책갈등관리지침의 작성 및 활용) ① 국무총리는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갈등관리지침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책갈등관리지침에 따라 공공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갈등관리지침에 해당 국가기관등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제22조(정책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무총리는 정책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공무원 등의 정책갈등관리 능력향상) 국무총리는 공무원의 정책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갈등관리 교육훈련기관과 연구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과 유형별 교재 개발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비밀 엄수)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회원은 정책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정책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① 국무총리는 국가기관등에 의한 정책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정책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국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국무총리는 정책갈등관리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협의를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한 국가기관등으로 구성되는 정책갈등관리협의회를 둔다.
- ⑥ 제1항에 따른 점검과 제5항에 따른 정책갈등관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정보시스템의 구축) 국무총리는 정책갈등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갈등사례·정책갈등관리전문가·국내외 자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정보시스템의 구축, 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정책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별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또는 직무상 목적외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요인

동 제정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영역간의 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참여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갈등의 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갈등영향분석, 정책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정책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정책갈등관리연구기관 지원, 정책갈등관리 전문인력 양성, 공무원 등의 정책갈등관리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예상된다(안 제10조, 12조, 18조 및 20조 등).

■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 미첨부 사유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에 따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정책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정책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갈등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며,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하여 정책갈등조정협의회 등을 신설하고자 하고 있다.

동 제정안의 취지에 따른 정책갈등영향분석, 정책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정책갈등조정협의회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 추계에서는 동 정책갈등관리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 국무총리

실의 2009년도 사회통합 및 갈등관리 예산에 준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하였다.

이 경우 2009년 기준 소요 비용은 정책갈등영향분석 3억2,000만원, 정책갈등관리심의위원회 6,113만원 등 약 4억8,60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세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사회통합정책갈등관리 소요예산 추정]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내 역
정책갈등영향분석	320,000	- 연구개발비
정책갈등관리심의위원회	6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금: 300,000원*6인*12회 - 여비 12,330 - 사업추진비 4,500 - 사례금 2,100 - 갈등사례검토, 갈등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결과 보고(국회 및 국무회의) 21,600
정책갈등조정협의회	2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회 및 간담회 사례금 - 협의회 업무추진비
	77,472	(전체회의 및 세미나, 지방순회토론회, 공개토론회 등)
	99,472	
정책갈등관리연구기관 지원	-	미 추계
정책갈등관리 전문인력 양성	-	〃
공무원 교육	-	〃
계	480,602	

주 : 정책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외부전문가는 6인으로 가정하였고, 정책갈등조정협의회는 사안에 따라 별개의 협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액으로 사례금을 추정하였음.

자료 : 2009년도 국무총리실 각목명세서

그리고 동제정안 중 정책갈등관리연구기관지원의 경우 현시점에서 지원대상 연구기관, 지원방법, 연간 지원액 등을 신빙성 있게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정책갈등관리 전문 인력양성 및 공무원의 정책갈등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경우 동 제정안에서는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빙성있는 재정소요 추계는 어렵다.

* 작성자 : 임두성 의원실 이상태 비서관(788-2913),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팀 정문종 팀장, 김병진분석관(02-788-4648, bce@nabo.go.kr)

【기존 갈등관리 법률안】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5월 국무조정실에서 입법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현재는 폐기된 법률안임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결주문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공기관과 국민 상호간에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회복을 통한 합의의 틀을 구축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해결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갈등영향분석의 실시(안 제11조)

- (1) 공공기관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정책을 결정·추진함으로써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있는 바, 정책결정전에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정책의 갈등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기 위하여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함.
- (2) 공공정책 등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거나, 동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3) 정책입안단계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제고와 함께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원만한 정책추진이 기대됨.

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2조)

- (1) 갈등영향분석서를 심의하고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필요함.
- (2)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3) 행정기관의 갈등의 예방·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공공정책의 갈등구조를 파악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안 제15조)

- (1) 청문회, 공청회, 공람 등 기존의 참여제도로는 해결이 어려운 갈등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범위를 넘어서 시민 등을 공공정책 결정과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2) 공공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 (3)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참여와 대화가 보장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과 정책집행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설립(안 제17조)

- (1) 공공기관의 갈등예방·해결능력 제고를 위한 갈등관리의 효율적인 지원과 갈등관리에 관한 민간부문의 인적·사회적 기반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원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 (2) 갈등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전문가 양성·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함.
- (3) 갈등관리지원센터를 통하여 사회전반에 갈등관리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갈등조정회의의 설치(안 제20조)

- (1) 공공정책 등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갈등조정회의의 설치가 필요함.
- (2)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3) 갈등조정회의를 통하여 갈등해결의 가능성과 이해관계인간 신뢰회복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요토의과제

없음

□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임
- 다. 합의 : 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05. 4. 12 ~ 5.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규제신설 : 1건)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공공기관과 국민 상호간에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회복을 통한 합의의 틀을 구축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해결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법령등을 집행하는 과정 또는 정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공정책등”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장 및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사업자(이하 “공공기관의 장등”이라 한다)가 행하는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및 정책·사업계획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공공정책등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갈등관리”라 함은 공공기관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등을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능력을 기관의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6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기관의 장등과 이해관계자는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와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이익의 비교형량)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 및 공유) 공공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가 공공정책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

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갈등의 예방

제11조(갈등영향분석)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정책등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사업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동사업을 소관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절차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등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자의 확인 및 의견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⑥ 그 밖에 갈등영향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관계직원과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공공기관의 장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등의 결정과정 또는 사업시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공공기관의 장들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일반시민 또는 전문가등의 합의(이하 “사회적 합

의”라 한다)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들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등의 결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관 행정기관의 협조요청)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장 및 민간사업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자체적으로 갈등의 예방과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갈등관리지원센터

제17조(갈등관리지원센터의 설치) ① 갈등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전문가 양성과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갈등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원센터의 기능)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 조사·연구
2.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3. 갈등의 예방·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보급
4.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지원
5.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관련전문가 양성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지원
7.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활동 지원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지원

9.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갈등조정회의 활동 지원

10. 민간부문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활동의 지원

11.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지원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출연) ①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갈등조정회의

제20조(갈등조정회의)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조정회의의 기본규칙등) ① 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은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기본규칙을 따른다.

②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조정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당사자 등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조정회의의 의장 또는 진행자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조정회의의 기본규칙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합의의 효력 및 이행) ① 조정회의의 합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회의의 합의사항은 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3조(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4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중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과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중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에 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 설립준비) ① 국무조정실장은 이 법 시행일 전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지원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지원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원센터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정부출연금 및 지원센터의 수익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3조(갈등영향분석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① 공공기관의 장 등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시범적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시범적으로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 당시 소관부서 :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실(02-3703-3858)

【현행 갈등관리 관련 대통령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이는 2008년 12월 24일 타법 개정된 대통령령 제21185호를 재정리한 것임(소관 :
국무총리실 사회문화정책관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18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은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능력을 기관의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참여와 절차적 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익의 비교형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을 위하여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 및 공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갈등의 예방

제10조 (갈등영향분석)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4>

제11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판단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 (심의결과의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갈등조정 협의회

제16조 (갈등조정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제19조에 따른 의장 1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 (의장의 역할) 협의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장의 선임)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①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③ 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협의회 절차의 공개) 이 영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유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5장 보칙

제24조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① 국무총리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갈등의 예방·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보급
 3.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 ② 국무총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국무총리실장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매뉴얼에 각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제26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① 국무총리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무총리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국무총리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 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둔다.
- ⑥ 제1항에 따른 점검과 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2조 제1호 및 별표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9조 (수당지급 등) ① 중앙행정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또는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 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한다.

③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현행 갈등관리 관련 총리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이는 2009년 1월 2일 일부 개정된 총리령 제892호를 재정리한 것임(소관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09. 1. 2, 총리령 제89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제3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설치기관) 영 제11조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1. 법무부
2. 법제처
3. 국무총리실
4. 통계청
5. 기상청
6. 검찰청
7. 특허청

제4조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도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 ① 국무총리실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2>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지정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또는 국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제6조 (연구기관의 요건) 국무총리실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4. 기업부설 연구소

제7조 (지정신청) ①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1. 영 제24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

3. 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체계, 주요업무 및 인력현황 등)

4.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연구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 지정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지정신청서는 전산접수와 우편접수 방식으로 접수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무총리실장은 연구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이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7.2>

④ 삭제 <2009.1.2>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지정사실의 통지) ① 국무총리실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1. 지정된 연구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주요 기능 및 역할

② 국무총리실장은 연구기관이 지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구기관 지정 사실을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제10조 (지정기간) ① 연구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무총리실장이 과제수행 기간의 연장, 과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7.2>

② 국무총리실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종료 통지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제11조 (경비의 지원과 관리) ①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를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실장은 연구기관의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에게 경비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2>

③ 제2항에 따라 경비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자체없이 국무총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제12조 (시정요구) 국무총리실장은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과제수행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2>

제13조 (연구결과물의 제출)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

구실적, 교육훈련실시 결과 등을 국무총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제14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국무총리실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1. 점검사항

2. 점검일정

3. 점검자 인적사항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5조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노동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소방방재청장·문화재청장·산림청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 또는 청의 차관·차장 또는 청장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7.2>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갈등과 관련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공갈등과 관련하여 정책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이 된다. <개정 2008.7.2>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정책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및 여비)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및 제15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제892호, 200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갈등관리 관련 조례】

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관련 조례

* 이는 이미 제정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청북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의 갈등관리 조례 및 운영규정을 제정일자 순서로 정리한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관련 조례 검토』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정책발전 및 갈등예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6. 7. 7, 훈령 제261호】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과 갈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중재·조정을 위하여 구에 정책발전 및 갈등 예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기획감사실장 및 각 과장과 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은 분야별 관련회의 때에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 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과 갈등에 관한 사항 [별표1]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의안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소관 분과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중재, 시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⑧ 회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제출된 안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위원 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각 국장, 과장, 국별 팀장 3명 내외
2.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 각 국장, 과장, 국별 팀장 3명 내외
3. 경제환경분과위원회 : 각 국장, 과장, 국별 팀장 3명 내외
4. 도시관리분과위원회 : 각 국장, 과장, 국별 팀장 3명 내외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환경분과위원회 :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도시관리분과위원회 :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8조(분과위원의 선임) ① 분과위원은 당해직위와 관련된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 구청장이 위촉한 위촉위원은 분야별 관련회의 14일전까지 선임한다.
제9조(의견청취와 자문)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이 위촉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갈등관련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3명 내지 5명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안건의 자문·심사 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설명 등) 의안을 제출한 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실·과장과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청북도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2007. 11. 23, 조례 제303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도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도에서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도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사항을 심의 또는 권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에서 갈등예방 및 해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 시·군,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권고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갈등예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책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복지여성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규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재직자
3.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충청북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이해관계자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등) 도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등) 도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라북도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7. 12. 28, 조례 제33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역내 구성원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로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하여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조례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지역내 구성원”이라 함은 갈등의 이해당사자를 말한다.
3. “갈등예방”이라 함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조정”이라 함은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의 지속 가능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참여적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하여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갈등예방 및 조정원칙)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이해관계인·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여 신뢰확보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자치단체간 갈등이 예견된 사항 또는 갈등 사항중 중대한 사항
2. 자치단체와 주민 또는 기타 기관·단체간 갈등이 예견된 사항이거나 갈등이 발생해서 지역경제에 손실이 크거나 지역화합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

제6조(기능) 협의회는 갈등이 예견된 사항이나 갈등사항에 관한 조정 및 권고 등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촉진한다.

1. 전라북도에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및 중앙정부 사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2. 갈등 사항에 관한 조사·분석 등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토론 등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역현안에 대한 경륜과 지식이 풍부한 자
2. 갈등 예방과 해결,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협의회에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임원으로 둔다.
- ④ 의장 및 부의장 2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역할) 협의회 의장 및 위원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정합의문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회는 조정합의문 작성 및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조정대상 의안상정 방법)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갈등이 예견된 사항 또는 갈등사항에 관하여 협의회에 상정하는 의안의 상정방법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1/3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여 의장이 발의한 경우
2.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당지역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도지사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12조(조정합의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조정된 내용에 관한 조정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 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조정합의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③ 도 및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정합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조정권고를 수용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의장이 재정 지원 등을 요청할 경우 도지사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된 의안을 검토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처리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회는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5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 소속 직원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갈등조정협의회와 이해관계인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선임한다.

⑤ 전문위원회 활동 기간은 당해 조정안건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14조(청문 및 자료요구) ① 협의회와 전문위원회는 갈등사항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협의회와 전문위원회는 갈등사항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지사에게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는 협조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사무기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약간의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과 직원은 의장이 임명한다.

④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지사는 사무처에 공무원을 파견, 겸직시킬 수 있다.

⑤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6조(행·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비밀유지) 의장 및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 2008. 01. 01, 조례 제35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 상호간에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회복을 통한 합의의 틀을 구축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해결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갈등"이라 함은 시가 조례 또는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시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시의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 "갈등관리 및 조정"이라 함은 시가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정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시정 등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소속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 ① 시장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의한 갈등이 발생한 경우, 협의회에 해당 갈등에 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5명 이내와 위촉직위원 15명 이내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기획관리실장 및 해당 갈등사안과 관련한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회의원
 2. 지방의회의원
 3. 언론사 임직원
 4. 대학교수
 5. 시민단체의 임원
 6. 이해당사자
 7. 그 밖에 해당 갈등사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제14조에 의한 합의효력이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협의회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합의의 효력 및 이행) ① 협의회의 합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의 조정이나 합의가 성립되면, 그 합의사항을 공포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지급) 협의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07. 17, 조례 제37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요 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와 시민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란 시의 주요 시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갈등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 시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 시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책의 추진배경
2. 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3.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5.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3. 제5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조정 및 해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지방의회의원

2.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언론인

4. 시민단체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갈등 당사자들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갈등조정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갈등사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갈등조정전문위원회는 갈등조정시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갈등조정전문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당해 조정안건의 해결시까지로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주요 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 시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실·국장, 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주요 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제17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① 시장은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타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순번	단체명	조례제정일자	조례명	조례번호
1	인천광역시 부평구	2006.7.7	정책발전 및 갈등예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제261호
2	충청북도	2007.11.23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제3039호
3	전라북도	2007.12.18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3314호
4	광주광역시	2008.1.1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3550호
5	대전광역시	2009.7.17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3755호

※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갈등관리 관련 조례를 의원발의로 추진중

【갈등관리 제도화 모델 구상】

갈등관리 프로세스: 기본방향 및 절차

길병옥 교수 (충남대학교)

최병학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갈등관리 제도화 모델 구상】

갈등관리 프로세스: 기본 방향 및 절차

길병옥 교수(충남대) · 최병학 박사(충남발전연구원)

□ 갈등예방 및 해결 프로세스 필요성 및 의의

- 갈등예방 및 해결 프로세스 개발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정책에 있어서 사전에 그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적용하는데 그리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 정부를 포함한 갈등당사자들 간에 호혜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갈등예방 및 해결과정에서 정부는 갈등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하는 경우와 정부가 갈등해결자 또는 갈등조정자로서 개입하는 경우가 있고 프로세스의 개발방향은 상생과 협력증진 차원에서 호혜적 방법에 근거하여 추진
 -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현실적용의 차원에서 일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 및 관리자들에게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안내서로서 그 절차를 제공하여 주고,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유도해내는 것임
 -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 개발은 갈등의 조정자 및 당사자로서 정부와 민원인 그리고 공무원 개개인들에게 원활한 정보소통과 의사교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사회통합 및 합의형성을 위한 갈등관리방안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법들로서 갈등조정자 및 당사자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회의,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시나리오 워크숍, 공론조사 등이 있음
- * 갈등관리 프로세스란 정부가 공공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관련 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해당사자와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대화 및 조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구해 나가는 일련의 절차

□ 갈등 예방 및 해결 프로세스 개발 원칙 및 방향

- 정부의 공공정책을 입안함으로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갈등당사자들이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면서 실제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
- 공공갈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유형은 회피/무관심(갈등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순응/수용(자신이 손해 보더라도 타인을 위해 양보하는 경우), 경쟁/대결(순응과 반대되는 것으로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도전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타협/절충(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경우), 협력(서로의 목적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win-win의 경우) 등으로 표출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타협과 절충을 통한 협력형의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는 것
-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예방 기법은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대화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형성을 중시하고 있고 정부는 갈등관리자 및 갈등조정자로서 각각으로 호혜적인 방법에 따른 갈등관리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대안적 갈등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을 통해 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정부 각 분야별로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ADR은 개념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또는 집단)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평화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돋는 다양한 갈등해결방안임
- 갈등관리 프로세스는 결국 의사교환과정으로 갈등은 바로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결됨을 이해하여야 하고 정부의 역할을 갈등당사자와 갈등조정자로 구분하여 사례분석과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 효과적인 갈등관리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갈등의 문제를 줄이거나 해결하며 한정된 자원의 틀 속에서 갈등당사자들의 타협과 협상대안을 제공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CMCC = \Sigma (C \cdot N \cdot C) \cdot E \cdot R / P$$

- ※ 갈등관리 능력(Conflict Management Capacity and Capability)
- ※ 타협과 협상 및 협력대안의 합(Σ)[Compromise·Negotiation·Cooperation]
- ※ 당사자들의 기대(Expectation), 한정된 자원(Resources), 문제(Problems)

-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이를 진단하고 조정하며 중재하는 시스템과 상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고 효과적인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갈등관리능력의 제고는 타협과 협상 및 협력대안을 제도적인 틀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냄으로서 가능함

□ 갈등 예방 및 해결 프로세스 관련 법/제도

- 갈등관리 법령 및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185]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09. 1. 2, 총리령 제892]
- 법/제도상의 갈등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 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대통령령 규정)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위원의 임기는 2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의 기능: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② 갈등조정협의회(대통령령 규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 협의회는 의장 1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음
-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름

③ 갈등관리정책협의회(총리령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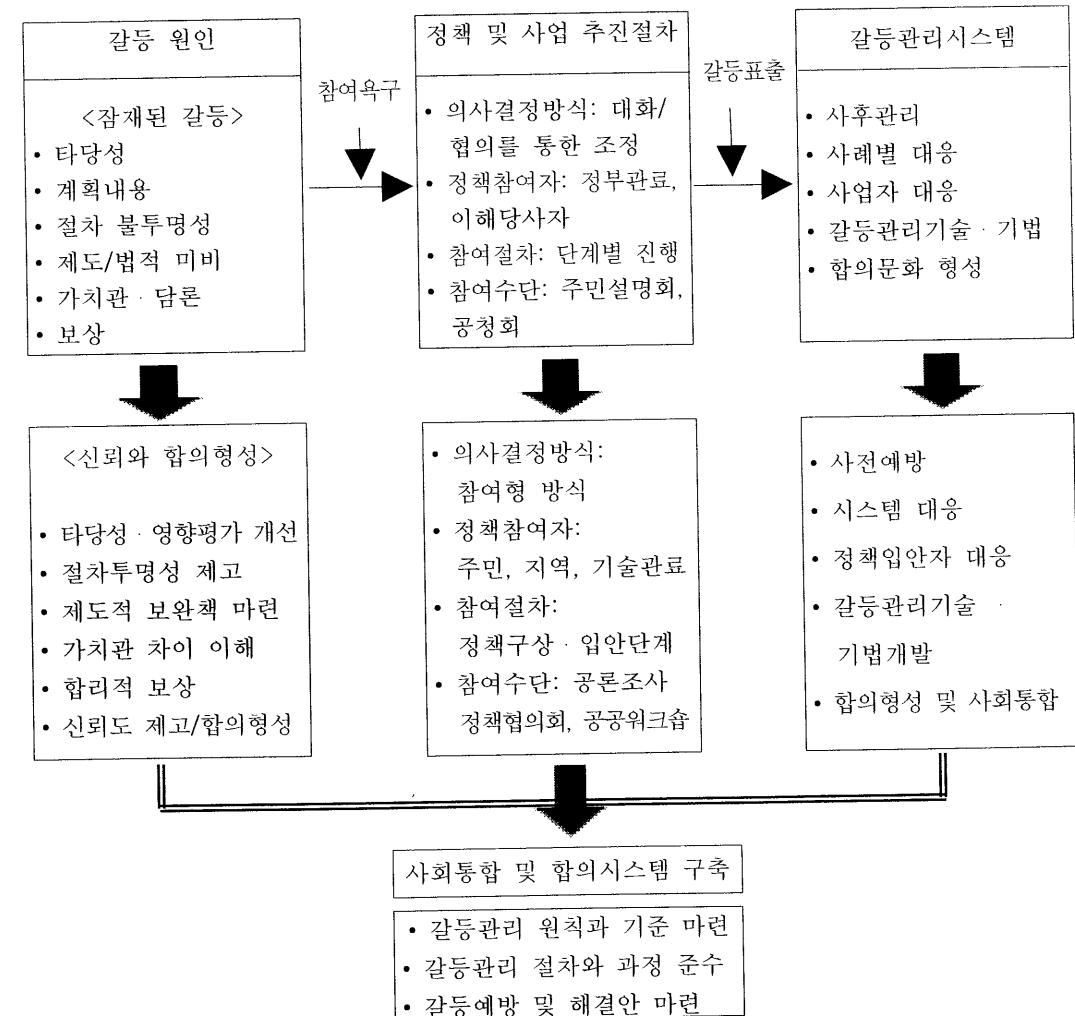
- 갈등관리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노동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소방방재청장·문화재청장·산림청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 또는 청의 차관·차장 또는 청장이 됨
- 정책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과 관련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공공갈등과 관련하여 정책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무총리실장의 역할: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갈등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 국무회의 보고 등
-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이 수행
-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보완이 필수적이며 제도적 기반에 따른 적실한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

□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해결의 방향 설정

- 사회통합과 합의형성을 위한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은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과 사업추진 절차를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고 그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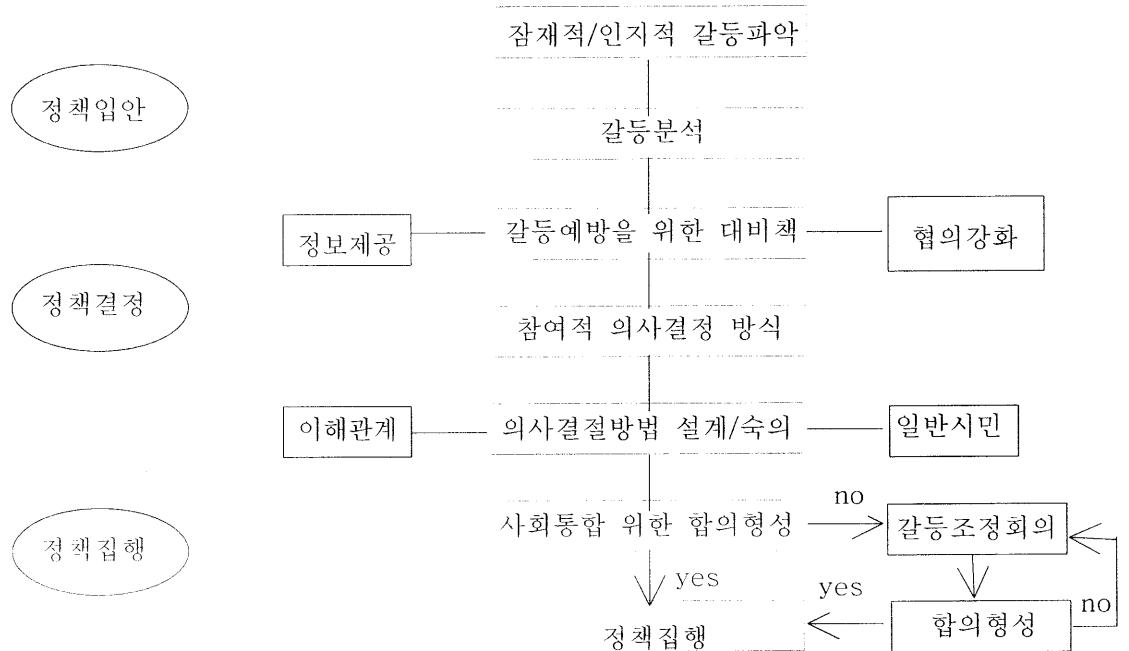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예방 및 해결의 기본방향>



출처: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 2003 및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2005 보완·수정함

- 갈등예방 및 해결 프로세스의 기본방향은 합의형성을 위한 일종의 정책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회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을 입안할 때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협의의 장으로서 갈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갈등관리 프로세스는 적어도 사회 경제적 영향력이 큰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절차로서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예방 및 해결 추진절차>



출처: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 2003 및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2005 보완 · 수정함

□ 갈등예방 및 해결 관련 기법 및 특징

-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시민 배심원, 규제협상, 시나리오 워크숍, 공론조사 등이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법
 - 합의회의는 갈등이 야기되거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에 대해 시민 패널을 구성하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

- 을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민포럼
- 합의회의는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발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
- 규제협상은 이해당사자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정책을 입안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하고 시나리오 워크숍은 지역개발정책을 입안할 경우에 주로 활용될 수 있음
- 규제협상과 시나리오 워크숍은 적용대상이 비교적 분명한 편이고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공론조사는 주로 가치갈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전국적 사안이나 지역적 사안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음
- 지역적 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은 가치갈등과 이익갈등에 모두 적용될 수 있고 이러한 갈등관리 기법들은 참여자의 대표성과 심사숙고성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음

- 참여자의 대표성의 측면에서, 공론조사는 합의회의나 시민배심원, 그리고 시나리오 워크숍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국적 또는 지역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이므로 대표성 확보가 중요한 사안에는 공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나리오 워크숍, 시민배심원, 그리고 합의회의를 비교해 보면, 시나리오 워크숍이 일반 지역주민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시민배심원은 합의회의에 비해 참여자를 무작위로 추출하므로 상대적으로 좀 더 대표성이 높음
 - 대표성의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공론조사>시나리오 워크숍>시민배심원>합의회의

- 심사숙고성의 측면에서는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는 합의회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시민배심원제, 시나리오 워크숍, 공론조사라고 할 수 있으며 공론조사의 경우 심사숙고성이 가장 낮은 이유는 충분한 통의과정을 거쳐 그 결과가 반영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있음
 - 심사숙고성의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합의회의>시민배심원>시나리오 워크숍>공론조사

- 갈등관리를 위한 참여기법들은 저마다 특성들이 다르므로 실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할 경우 다양한 기법들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살례에 따라 새로운 기법이나 모델을 구상하거나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 현실적임

- 갈등예방 및 해결기법들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구분	갈등 범위	갈등 성격	이해당사자	장점	단점
합의 회의	전국적, 지역적 갈등	가치갈등	전국민	충분한 정보제공과 토론을 통해 일반인들의 합리적 의견 얻을 수 있음	시민패널을 지원자 중심으로 구성하므로 대표성에서 취약함
시민 배심원	전국적, 지역적 갈등	가치갈등	전국민	충분한 정보제공과 토론을 통해 일반인들의 합리적 의견 얻을 수 있음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수가 적어 대표성에서 취약
시나리오 워크숍	지역적 갈등	가치갈등, 이익갈등	전지역민	일반 지역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지역개발계획수립 과정에 함께 대등하게 참여함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므로 합의도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규제 협상	전국적, 지역적 갈등	이익갈등	뚜렷한 이해 당사자 존재	사회집단과 정부대표들이 동등한 지위로 협상을 벌여 규칙을 제정하므로 사회집단의 참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	조직화된 사회집단이 아니면 협상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움
공론 조사	전국적, 지역적 갈등	가치갈등, 이익갈등	전국민, 특정집단	단순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많은 정보와 토론에 기반하여 도출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이, 합의회의나 시민배심원에 비해서는 참여자의 대표성이 훨씬 높다는 점이 장점임	참여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합의회의나 시민배심원에서 하는 것만큼의 심사숙고 과정을 거치지는 못함

출처: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 2003 및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2005 보완 · 수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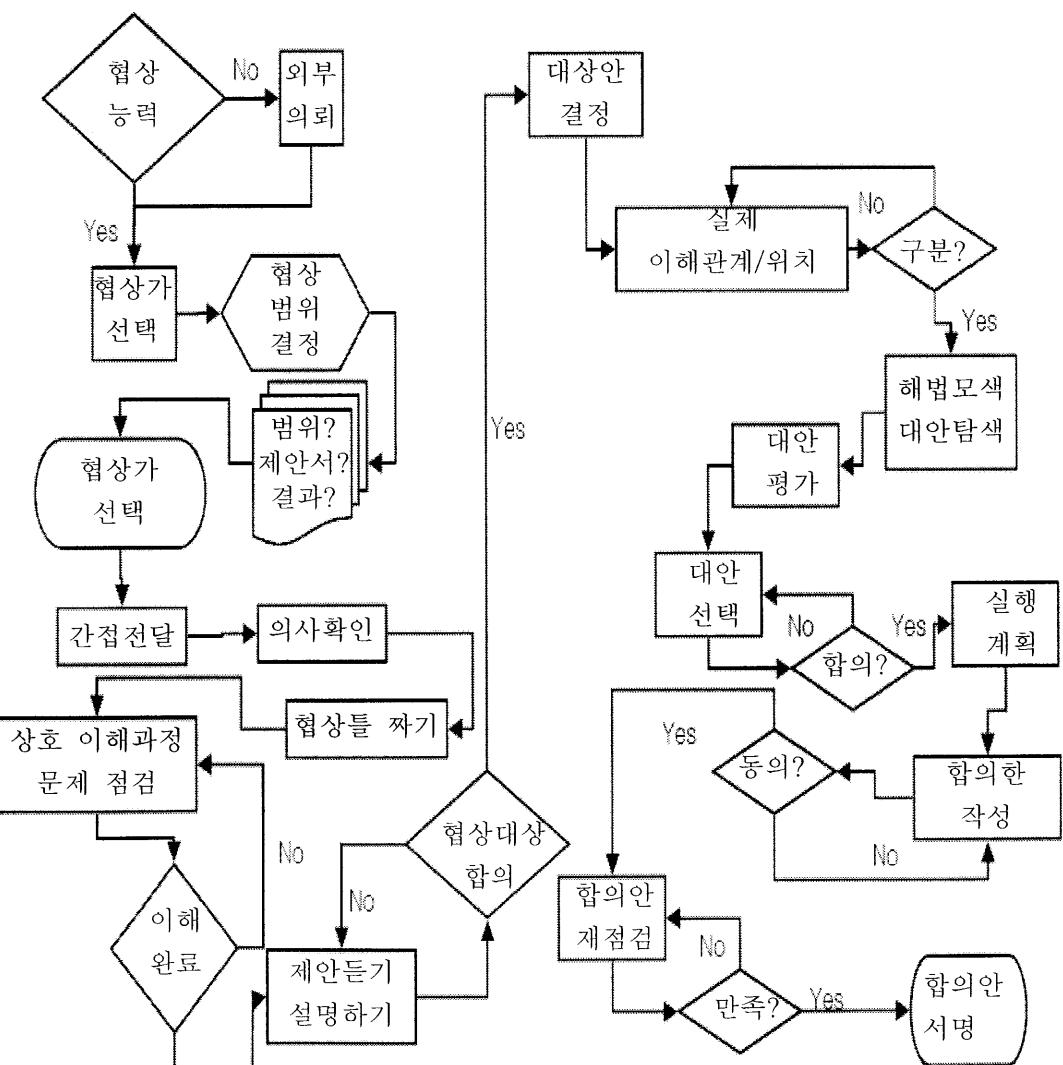
□ 갈등예방 및 해결 프로세스 적용의 예

- 갈등관리 프로세스는 정부가 갈등관리자로서 또는 갈등조정자로서의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갈등의 유형(즉, 이해관계의 갈등, 구조적 갈등, 가치의 갈등, 사실관계의 갈등 등)에 따라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갈등당사자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풀리지 않는 갈등의 경우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 규제협상, 공론조사 등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음

- 조정 프로세스는 갈등예방은 물론이거니와 갈등당사자 상호간의 갈등해결(협상을 포함한)에도 실패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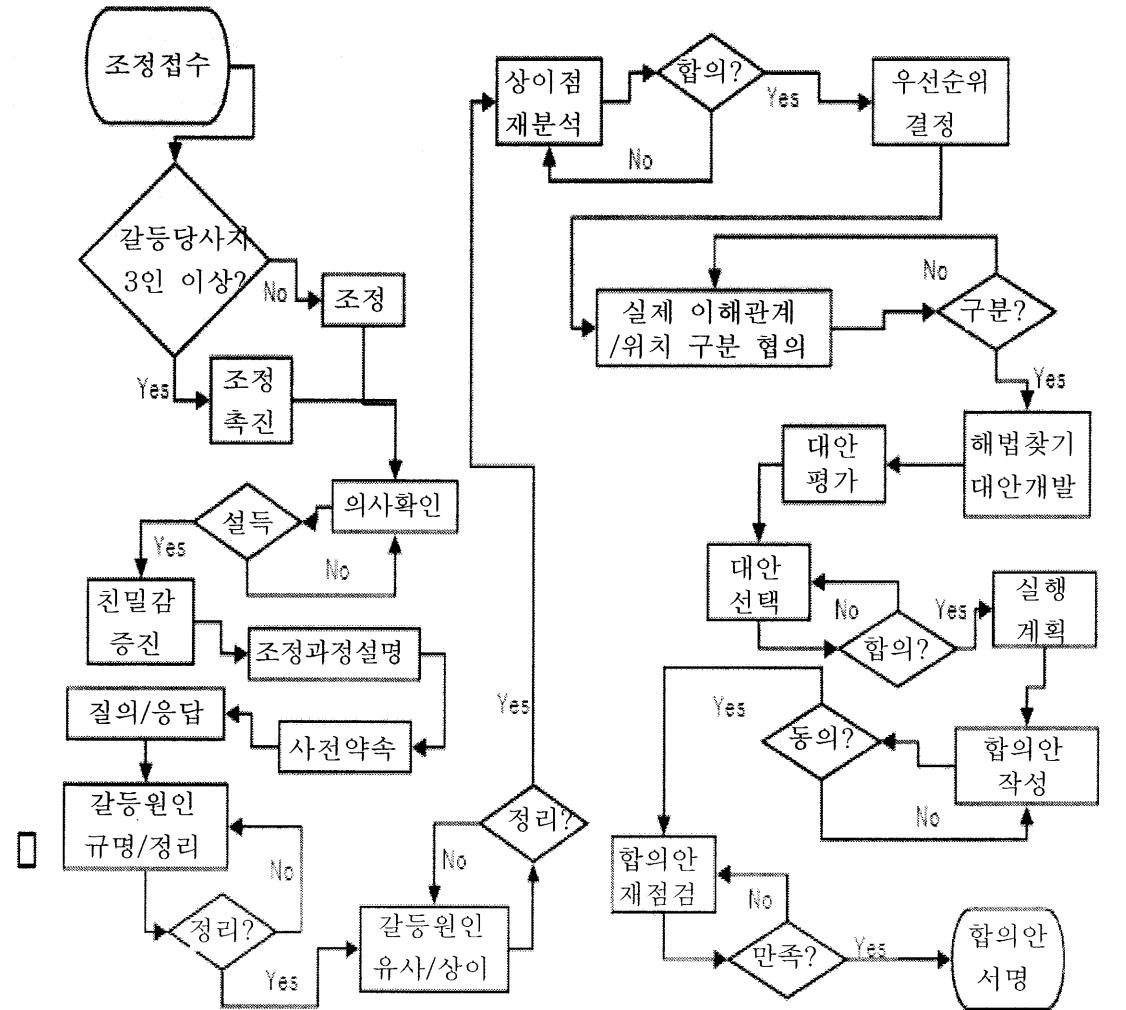
- 정부가 갈등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상 프로세스 이해를 위한 전체 흐름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음



출처: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 2003 및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2005 보완 · 수정함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제도화 추진 전문가 워크숍」

- 정부가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상 프로세스 이해를 위한 전체 흐름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음



출처: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 2003 및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2005 보완 · 수정함